

2014 홀트학교 인권교육 계획



- 1 -

-차 례-

☐ 소통과 공감으로 화목한 학교

1. 담임교사 중심 학교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2. 학생상담 활성화

☐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1. 학교안전시스템구축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체제 구축
3. 학교폭력 예방교육
4. 학교폭력 사안처리
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6.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 존경과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1.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
2. 학생자치회
3. 모범학생표창 사항
4. 생활인권교사제 운영

부록) 2014 생인권실천연간계획

서식(생활인권교사 순찰 일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담임교사 중심 학교인권교육 책임제 운영

가 목적

-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인권교육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 학급 담임교사가 책무성과 지도성 발휘,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교 적응 조력
-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나 추진 방침

- 학년·학급별 학생 학교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실천
- 담임교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도 전개
-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학급관리로 비행 및 각종 사고 예방
- 가정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인권교육 방안 모색

다 세부 추진 사항

1) 학년·학급별 학생 학교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기 초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교사 등의 참여로 학교인권교육 계획 수립
 - 학년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학년·학급 분위기 조성
- 학기 초 민주적인 학급운영 계획 수립 및 실천
 - 담임교사의 학교인권교육 방침 수립 및 교육
 - 학생 자치적으로 학급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 3 -

2)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 학급 담임의 상담활동 강화
 - 학생 개인별 수시 상담(폭직상담, 이메일 상담, 전화상담 등) 실시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지도 및 누가기록부 작성
 - 도울 학생의 지속적 관찰 및 적절한 상담 실시
- 학생 이해를 위한 학생 기초자료 조사 철저
 -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여 도울 학생(폭력, 집단 괴롭힘, 비행, 가출, 흡연, 절도 등)을 파악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보호자)와 공유(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개별상담, 폭직상담,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생들의 고충과 분위기 파악

3)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전개

- 신고·상담체제 확립 및 홍보 강화
 - 교내 신고항 수시 확인 및 사이버 상담망 구축 운영 협조
 -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별 신고 전화망, 홈페이지 이용 신고 안내
 - 학교폭력 긴급신고전화(117)를 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 학교·학급 내 집단따돌림 근절지도
 - 분기별(학교), 수시(학급)로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 실시
- 교내·외 순회지도 강화 및 학교 주변 안전지대 운영 내실화
- 3·3·2 프로그램을 통한 사안 예방지도

구분	3	3	2
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인권존중교육 - 안전(교통)교육	조·종례 3분 (매일 6분)	매월 2시간

4) 비행 및 각종 사고예방 활동 강화

- 학급 담임교사 중심의 책임감 있는 학교인권교육 강화
 - 담임교사의 학생 출결관리 및 결석 학생 소재 파악
 - 학급활동 전반에 걸친 임장지도 및 사제동행 실천으로 사고 예방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 기울이기
- 학급 위해환경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 사전 예방
 - 매월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학교의 제반 안전상태 점검 철저
 - 학생들의 심리적인 고충과 위해요소 수시 파악 및 대처
- 가출예방 활동의 강화
 -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 가출 원인 파악 및 가출방지를 위한 지도 방안 강구
- 결석 학생 없는 학급 만들기
 - 담임교사는 조·종례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훈화 지도

- 개별상담을 통한 부적응 학생 사전 비행 예방 지도 철저
- 결석·지각·조퇴 등 근태사항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처
- 부적응 학생 가정과 수시 연락 및 연계 지도
- 학업중단학생 복교 추진 및 학교 부적응학생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원인 분석 및 개인상황에 맞는 학교인권교육 전개

5) 가정과 연계한 지도로 각종 비행 사전 예방

- 부적응학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도 위주의 학교인권교육 실시
- 학부모(보호자), 지역사회인사,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도 실시
- 가정통신문, 전화상담,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한 학부모(보호자) 연계지도 실시

6) 즐거운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급별 다채로운 활동 전개

- 학급규칙 제정 운영
- 학급 단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급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학급운동회, 요리대회, 체험활동, 합창대회, 친구사랑의 날 행사 등
- 친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신해서 도움 요청하기

2 학생상담 활성화

가 목적

- 학생 상담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각종 일탈 행위 사전 예방
-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상담인력의 현장 배치로 예방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실현

나 추진 방침

- 학교 실정에 맞는 상담 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다 세부 추진 사항

- 연간계획 수립
 - 담임교사, 진로상담부 및 생활인권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적응 학생 상담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학교 상담 기능 강화
 - 전문상담교사 등 적임자 배치로 상담실 기능 강화

- 5 -

- 도울 학생 1인 1교사 결연 지도
- 학교 중심의 상담망 구축 운영
 -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망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1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가 목적

-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관·학 연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처

나 추진 방침

- 학교폭력 없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추진
- 유관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처 및 처리
-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 3대 과업(3·3·2프로그램)’ 실현
- 외부인 출입자 관리 및 경계 활동 강화

다 세부 추진 사항

1) 학생 안전 3·3·2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안전 3대 중점과제 예방교육 계획 수립
 - 제1 중점과제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제2 중점과제 : 인권존중교육
 - 제3 중점과제 : 안전(교통) 교육

2)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학부모자원봉사자 등) 운영

- 학생보호인력운영으로 안전한 학교실현
- 배움터지킴이형 운영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 학교 내 순찰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 등을 현장에서 예방·제지하여 불량 동아리 결성, 집단따돌림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 기타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 자격 : 퇴직 교원, 퇴직 군·경·소방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지역인사, 학부모 등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학생보호인력의 위촉절차, 역할 및 활동여건, 금지행위 등을 명시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은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가능 • 연1회 이상 학교자율적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범죄경력조치를 실시

3) CCTV설치 및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CCTV 설치 및 운영한다.
- 총괄책임자는 행정실장, 운영실무자는 과학정보부장으로 한다.
- 각 책임자의 역할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주요 역할
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운영실무자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안전생활 취약지구·시설 등 감시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
- CCTV 설치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설치 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외부인사 등으로 설치위원회 구성(5인 이상)
 - 설치위치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협의 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 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함
 - 설치 업체 선정 방법
 - 학부모, 교사, 외부인사,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5인 이상)
 - 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유지, 관리, 사후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 무상 A/S 1년, 유상 A/S 5년 이상 가능 할 것(「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제1항제2호)

- 업체 선정은 다수의 우수업체 중에서 선정
 - ※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제1항제1호)
-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경우 CCTV 설치 시 정보통신 공사업자로 할 것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학교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운영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필수감시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설치 시 준수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영상정보 수집·처리의 제한, 보유기간 등 취급 시 준수 사항 제시

4) 학교 내 SAFE-ZONE 지정·운영

- 목적 : 조기등교, 방과 후 공백 시간 등 학생 보호가 어려운 틈새 시간에 이용
- 이용대상 : 조기 등교, 늦은 귀가 학생, 방과 후 학생 귀가 차량 대기자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
- 지정장소 : 중일반
- 운영방법 : 외부인 접근 제한구역 표시 및 출입제한, SAFE-ZONE 안전 담당자 상주

5)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 등·하교 등을 위한 학교 출입문 개방 시 반드시 학생보호인력·교직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 관리 실시
-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발급·패용한 자만 출입
 - ※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교직원증·학생증 등 신분증을 상시 패용
 - ※ 외부인의 출입증(방문증) 패용 안내문 게시 필수
 - ※ 외부인의 출입증은 상시출입자를 위해 기간을 지정해서 발급할 수 있음
-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교내 대응시스템 구축(비상벨, 비상전화 설치 등)
- 일과 전·후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 강화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6) 학교 내 사각지대 안전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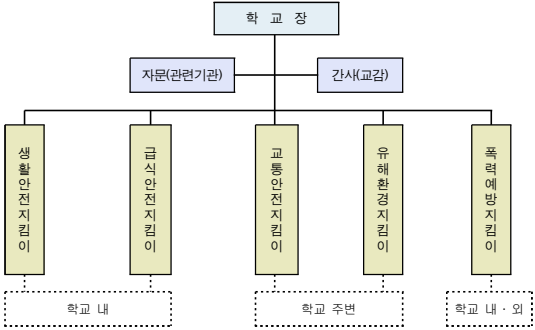
- 수시 순찰 실시
- 학교시설 변경 시 학생안전대책 수립 시행
 - 학교담당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대책 수립 시행

7) 휴업일, 공휴일, 방학 등 학교 경비용역 교내 순찰 강화

- 활동일 : 연중(휴일, 휴업일 포함)

- 활동 내용 : 휴일, 방학 중 학교 및 학교 주변 순찰 시 취약지구 포함(계약 시 포함)
- 순찰 담당 : 학교 당직자(용역업체) 등

8) 학교 안전지킴이 조직



- 학교 안전지킴이 구성 및 역할

조직부서	구성원	역할
생활안전지킴이	행정실장, 소방관, 교사,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 기타 설비점검 전문가	• 학교 전기, 소방시설 점검 • 학교 체육시설 점검 • 휴식(점심)시간 생활점검
급식안전지킴이	영양교사, 학부모(급식모니터링), 교육자원봉사자	• 급식 자체 점검 • 급식실 위생 점검 • 급식 식자재 업체 점검 • 등하교 시 교통 지도
교통안전지킴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경찰관, 모범운전자, 교통담당교사, 교육자원봉사자(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은빛봉사단, 보행안전도우미)	• 교통안전 예방 지도 • 등하굣길 보행 안내 • 학교 주변 교통위험 시설 점검
유해환경지킴이	학부모, 생활인권담당교사, 교육자원봉사자	• 학교 주변 유해물 점검 • 학교 주변 유해업소 계도 및 고발
폭력예방지킴이	학부모, 경찰관, 교사, 교육자원봉사자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 학생보호인력	• 학교 내·외 우범 장소 순찰 • 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 • 폭력학생 선도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체제 구축

가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 학생을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오고 싶은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 학교 내 차별, 언어폭력, 학교폭력 근절로 학교생활 불안감을 해소 한다.
- 지도보다는 대화와 상담, 자율과 책임에 의한 생활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공동체의 인권선언 등, 참여와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나 추진 방침

-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태를 점검한다. 교원의 학생 인권 인식을 제고 시킨다.
- 책임있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교직원 및 학생 등에 대한 장애학생 범죄예방 및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인권 침해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지원 시스템으로 학생생활인권규정과 인권소리함을 운영한다.
- 생활인권교사(주변교사) 및 배움터지킴이를 통해 정기적인 교내순찰을 실시한다.

다 세부 추진 사항

- 1) 학교폭력 예방 체제 구축
 - 조직도

위원장	교감
예방 및 교육 분과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 학교폭력사안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생활교육부장 학부모1명	증재 및 조정 분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가 · 피해학생 간 분쟁 조정 학교운영위원 1명 학부모 위원 3명 경찰공무원 1명 보건교사 1명

◉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비고
학교폭력 근절	· 학생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주변교사 및 배움터지킴이) · 인권소리함 및 교내 사각지대 CCTV 설치 · 정기적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학교 홈페이지 학생 인권 관련 팝업창 설치	연중
학생체벌 및 확실적 규제 금지	· 전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장애헤생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 정기적 실시 · 학생들에게 경어 사용 권장 · 각종 두발 및 복장 등의 확실적 규제 금지	매월 첫 주 조회 시 연중
기본 좋은 등· 하교 지도	· 등· 하교 시 안전 및 예절지도 실시 · 등· 하교 시 통학버스까지 학생 맞이 인사 및 배웅하기 · 등· 하교 타임피크제 실시 · 등· 하교시간 학교 출입차량 통행 제한	매일

2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 목적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나 추진 방침

- 학생상당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생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
- 가정 · 학교 · 사회의 연계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 함양

다 세부 추진 사항

- 1)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학생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 원칙
 - 강의, 놀이, 게임,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학생 예방교육은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시간에 학기별 학급당 2시간(연간 4시간) 이상 실시 권장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탑재
 - 학교폭력 예방포털(www.stopbullying.or.kr > 자료공간 > 교육부자료실 > 예방교육자료)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과별누리집 > 학교인권지원과 > 과자료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교직원 예방교육은 교원 뿐 아니라 행정직원, 영양사,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 학부모 예방교육은 학교 설명회, 일과후 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참여율 제고
- 친구사랑 주간 운영
 - 학기초(3월, 9월) 학사 일정 고려하여 1주일씩 운영
 - 친구사랑 학예행사(학급규칙 만들기, 학교폭력예방 서약식, 친구사랑 우체통 등)
 - 친구사랑 캠페인(학생자치회, 학부모회, 지역사회), UCC 제작 발표회 등
 - 친구사랑 주간 중 1일을 지정하여 ‘친구사랑의 날’ 운영
-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운영
 - 학기초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자기주도학습 시간 활용 운영

3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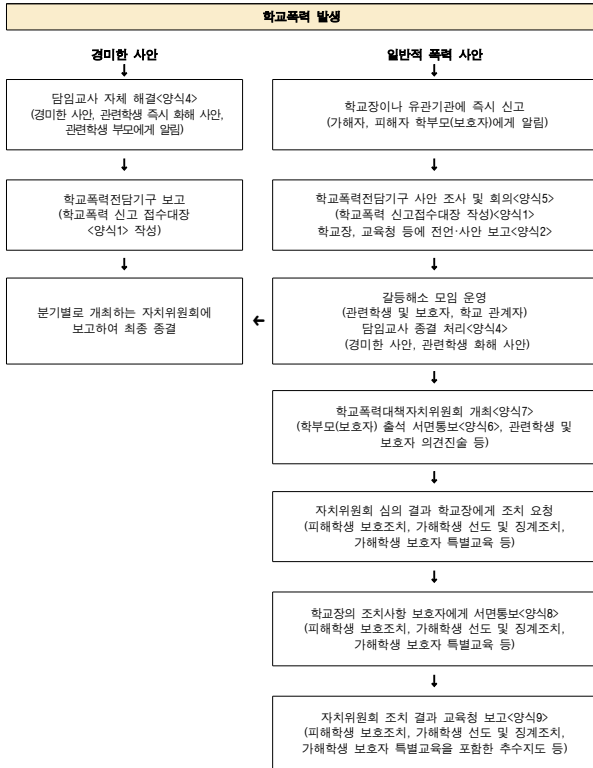
○ 체계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확립을 통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실현

나 추진 방침

- 지속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 파악 및 처리

다 세부 추진 사항

3)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 13 -

- 중대사안 보고
 - 학생 사망, 안전사고, 학교폭력 관련 사안, 집단으로 발생한 사안<양식 2>
 -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양식 3>

- 보고 요령
 - 발생 즉시 전연 보고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
 - 고등학교 :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249-0210~3, 249-0912~5)
 - 표지 공문 없이 직인 찍어 FAX로 보고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
 - 고등학교 :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FAX 031-249-0394)
 - 교육지원청 : 초·중학교 중대 사안은 도교육청으로 보고

4) 담임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

-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증거가 없음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 조치방안
 - 담임교사가 도래상당, 도래중조, 학생자치법정, 학급회 등 프로그램 운영
 - 담임교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거 처리
- 처리절차
 - ‘담임교사 종결사안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구에 제출하고 학교에 보관<양식2>
 - 학교폭력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함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사안 종결되었음을 확인함(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 작성)
 - 전담기구는 최종적으로 그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그 사안 보고를 위해 별도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고, 추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보고하여 종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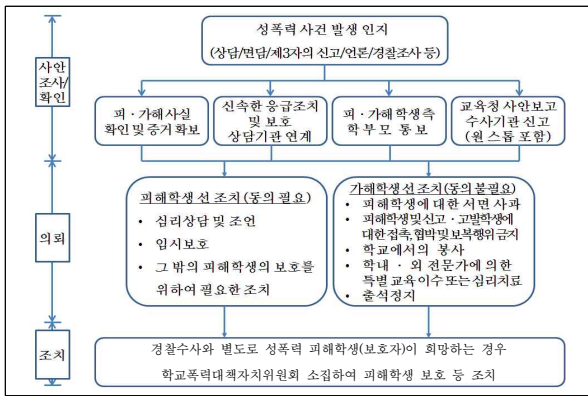
라 학생 성폭력 사안 처리

1)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 성기노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음란전화, 스토킹 등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접촉

2) 학교의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 14 -



- 발생 즉시 전연 보고(보고서 양식에 의거 표지 공문 없이 적인 쪽어 FAX 보고)
 -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에게 보고
- 유의 사항
 -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
 -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심리상담, 임시보호 등)시에는 피해자 동의 필요
 - 성폭력 피해학생(보호자)이 신변 노출 방지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석하지 않을 수 있음<다만, 피해학생(보호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3)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

-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학교장이나 교사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률에 의거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함
- 성폭력 피해학생 응급조치
 - 성폭력 사건의 발생 직후에는 피해학생의 신체에 남은 흔적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빨리 성폭력 여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학생을 데리고 감
 - 몸에 외상이 남아 있을 경우 사진 촬영을 함.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가급적 얼굴과 같이 찍도록 하며, 멍이나 긁히거나 뜯긴 상처 등이 있을 경우 발견되는 대로 촬영해 둠
 - 병원 진단이나 몸에 남은 상흔 외에 다른 증거물, 이를 태운 가해자가 흘리고 간 물건 등은 반드시 보존하도록 함

- 15 -

-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림
- 수사 기관에 신고
-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 신속히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조치를 받도록 함.
 - 관련 기관 :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117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 경기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1899-307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문제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 이행의 문제는 별개임
- 피해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
 - 상담 시작 전 반드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약속
 - 상담 장소는 피해 학생이 가장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장소로 함
 - 피해학생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
 - 피해학생이 상담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줌
 - 피해 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피해학생이 말로 하기 어려워 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의 안전(추가적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여 보호조치를 취함
 - 피해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
 - 여성 긴급 전화 및 긴급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개입 과정이나 주의사항, 긴급보호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음
- 피해학생 상담 시 주의하여야 할 2차적 피해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학생은 사건해결 과정 중 심리적 충격을 재차 받을 수 있음. 이를테면 상담, 의료, 수사 과정 중에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이고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학력이나 옷차림, 가정환경, 평소 행동 등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접근하게 되면 피해 학생에게는 오히려 성폭력 자체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교직원이나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상담할 때에도 이러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예) "네가 그렇게 웃을 입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너도 동의하지 않니?"
 "그렇게 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니?"
 "너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다."

-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주변 학생에 대한 조치
 -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알린다.
 - 성폭력은 일종의 폭력이고 특히 매우 조심스러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므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 학생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함

- 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

4)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 가해학생과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심신안정을 도모
- 피해학생 보호자와의 협의
 -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강구
 -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는 모두 성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음
- 피해학생 보호자와의 협의
 -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
 -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검사의 수감명령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
- 피해학생의 등교 거부 시 조치 및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 피해학생이 등교를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
- 성폭력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처리
-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지원시스템 홍보
 - 수사기관 : 112, 경찰서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아동상담전화 1577-1391 및 복지콜센터 129
 - 청소년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8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 17 -

·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수원아주대학병원, 216-1117)
·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874-3117)
·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안산한도병원, 364-8117)

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가 목적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학생 권익 보호
-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모든 권익과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배려

나 추진 방침

-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예방 및 지도 방안 강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경찰청, 가정폭력 전문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활용
-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책반, 교육지원청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 지원

다 세부 추진 사항

- 1)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가 목적

- 학생의 수준에 맞는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의식을 심어 주어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한다.
- 양성평등한 성가치관을 갖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행동변화를 추구하고 남성과

- 18 -

-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등한 사회인이 되도록 유도한다.
- 학생들의 성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의 성교육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으로 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추진 방침

- 건전한 성의식 높이기 위하여
 -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서 성교육이 효과를 높인다.
 - 학생의 수준에 따른 성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한다.
 - 성의식을 지닌 성숙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 평등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 양성평등의 의미를 알고, 남녀 차별 없는 밝고 명랑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한다.
- 인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 갖가지 성폭력의 사례 등을 통하여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가정의 소중함 깨닫고,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학생이 되도록 교육한다.
 - 가정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한다.

다 세부 추진 사항

- 1) 관련교과, 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학년별 10시간의 성교육 시간을 확보한다.
- 2) 학급 담임은 창의적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에 10차시 성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 3)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협력하여 실시하며 담임교사는 관련시간에 성교육을 운영하고 보건교사는 성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홍보, 상담, 연수 등으로 담임교사의 수업을 지원한다.
- 4) 성교육의 내실화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힘쓰기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도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연수는 전문가사 활용, 보건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한다.
- 5) 성교육 지도 시 영역별 주제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개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보건교과서 5,6학년 생활 속의 보건,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용 멀티미디어 성교육,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활용한다.

추진내용	목표	시기	대상	비고
학년별 성교육 실시	10시간	연중	전교생	·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 장애학생용 멀티미디어 성교육 · 보건교과서: 생활 속의 보건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let,s talk 건강한 우리들의 성
학생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2회	연중	전교생	·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 1회 외부강사 활용 · 창제 시간활용 영상교육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3회	1,2학기	전교직원	· 성 고충 상담 및 학생지도 안내 · 성희롱·성폭력(영상물1회, 외부강사1회) · 성매매 예방교육 영상물 1회
학부모 성교육 실시	2회	1,2학기	학부모	· 보건 소식지, 학교홈페이지 1회 · 외부강사 초청 1회
성고충 상담원 지정	1회	3월	남1, 여1	· 남: 교사 김○○ · 여: 보건교사 박○○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연중	전교직원 전교생	· 위원장: 교감 · 위원: 교무부장, 생활부장, 체육부장, 기숙사 사감, 보건교사, 교사 · 성희롱 사건의 신속처리 및 피해자 보호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1회	3월	전교직원 전교생	· 2012년도 홀트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성상담 활동	매일	연중	전교생	· 전화상담, 방문상담 · 성고충 상담실 설치: 보건실

□ 존경과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

가 목적

- 인권교육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 양성
- 학교공동체 인권 신장을 통한 소통·자율·책임이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나 추진 방침

-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 학교공동체의 인권인식 신장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인권존중 풍토 조성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상호 신뢰 형성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분위기 개선
-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을 통해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학교문화 조성

다 세부 추진 사항

- 1)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확대
 -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 학생 :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 교원 : 학생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
 - 학부모 :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맞춤형 교사연수 강화
 - 교원에 대한 직무 및 자격연수에 학생인권교육 과정 편성
 - 교원 연수기관을 활용한 학생인권교육 원격연수
 - 학교공동체 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별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 교과교육 시간 연계 지도 및 계기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 행사 계획 수립·추진
 -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행사에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내용 반영
 - 학교공동체 인권 신장을 위한 학습자료 활용
 - 인권교육 학습지도 자료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과별누리집 → 학교인권지원과 → 과자료실
 - 학생인권 관련 영상 활용
 -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경기교육방송 → 기획특집 → 학생인권영상자료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홍보 영상 및 학생인권 관련 플래시 자료
 - 학생인권 자기주도학습 멀티미디어 자료
 - ▶ 경기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 → 우측 상단(구)교육연구원 →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 → 멀티미디어자료 → 인권 교육 콘텐츠
- 2)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언어사용
 - 등·하교 시, 점심시간 학생 안전지도
 - 등·하교 시 교문 지도에서는 기본생활습관 관련 인사 및 예절 교육 실시

- 21 -

2 학생자치회

가 목적

-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 및 투표활동을 통하여 자기 권리표현 능력을 기른다.
-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선도활동과 남을 도울 수 있는 봉사 정신과 태도를 기른다.

나 추진 방침

- 학생회 운영은 선출된 임원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지도교사가 학생회 활동을 제한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학생회 회장단 및 임원은 매년 4월중으로 선출하되, 학교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회장단은 초5~고3 학생에 의한 직접선거로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되, 가능한 중학교 이상 학생 중에서 선출한다.
- 임원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과 과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한다.
- 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학교행사 및 학생 중심의 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수 있다.

다 세부 추진 사항

구 분	활동 내용
회 장 (부회장)	애국조회 및 학교 행사 사회, 학생 질서유지 및 지원활동, 학생회 회의 주관, 학생의견 수렴 건의, 방송반 운영, 기타
선 도 부	휴식시간 학생 안전 관리활동, 학교 규칙 준수 및 질서유지, 생활 안전 위해요소 수시건의, 기타 학생회 활동 보조
봉 사 부	주변활동, 방송반 활동, 식당 정리 및 우유배식 보조, 분리수거 및 환경정화활동, 학교행사시 자원봉사활동, 기타

3 모범학생 표창

가 목적

- 학교현장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범 학생 및 교원(학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학생에게는 바른 인성함양을 함양하게 하고, 교원(학교)에는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나 추진 방침

- 청소년의 달, 1학기 말, 2학기말에 모범학생 표창
-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실적을 고려하여 표창

다 세부 추진 사항

- 표창 시기: 청소년의 달, 1학기 말, 2학기말
- 표창 인원: 학급별 1명
- 표창 분야: 8개 분야 (효행, 봉사, 선행, 자립, 학업, 체육, 예능, 기능)

4 생활인권교사제

가 목적

- 한 주간의 학생 인권 생활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 안전 및 인권생활 지도에 안전을 기하여 인권친화적이며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 방침

- 교내를 수시로 순시하여 합리적 에너지 이용 실태,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 환경미화와 같은 필요한 사항을 순찰일지에 기록한다.

2014학생 인권 실천 연간 계획

가. 연간 실천 계획

월	중점	월 생활교육 목표	운영방침	중점 지도 사항
3월		인사를 잘하자	교원과 학생의 인권 존중 풍토 조성	•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 선생님께 인사하기 • 친구와 인사말 나누기
4월		서로 돕는 생활을 하자	소통과 사랑 · 나눔 교육 충실로 생명존중의식 고취 및 인성교육 강화	•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 친구 도와주기 • 정리정돈 잘하기
5월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존중 · 배려 · 나눔의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	• 부모님께 감사하기 • 선생님께 감사하기 • 부모님과 선생님께 편지 쓰기
6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순국선열의 호국보훈 정신 계승 지도	•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 태극기와 무궁화 알기 • 순국선열에 감사하기
7/8월		건강한 생활을 하자	여름철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및 물놀이 사고 예방 지도 강화	• 바르게 손 씻기 • 음식물에 주의하기 • 몸을 깨끗이 하기 •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9월		안전한 생활을 하자	등 · 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 교육 철저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위험한 장난하지 않기 • 안전규칙 잘 지키기 • 질서 지켜 생활하기
10월		환경을 아름답게 하자	에코그린스쿨(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	• 휴지 버리지 않기/줍기 • 1인 1억할 청소활동하기 • 환경정화 활동하기 • 분리수거 하기
11월		절약하는 생활을 하자	에너지이용 합리화 운영 계획 실천	• 사용하지 않는 전기 끄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학용품 아껴 쓰기
12/2월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및 겨울방학 건전하게 보내기	•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 겨울철 화재예방 • 연말연시 안전사고예방하기

구 분	활동 내용
등· 하교 시간	· 통학버스 승· 하차 시 질서 지키기 ·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 실내·외화 구별하고 바르게 신기 · 자기 물건(가방, 신발 등) 챙기기 · 우측통행하여 스스로 교실 찾아가기
수업 시간	· 시중시간 지키기 · 바른 수업 태도 갖기 · 학용품 아껴 쓰고 정리정돈하기 · 무단이탈하지 않고 허락받고 활동하기
쉬는 시간	· 차례를 지켜 화장실 사용하기 · 남녀화장실 구분하고 깨끗이 사용하기 · 복도나 계단에서 우측통행하고 뛰지 않기 · 책상이나 벽에 낙서하지 않기 · 교실에서 이탈하거나 친구들과 위험한 장난하지 않기 ·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적절한 도움주기 · 위험한 놀이지지 않기
점심 시간	· 질서를 지켜 급식실 이용하기 · 식사 전 손 씻기, 식사 후 이 닦기 · 식사예절을 지켜 식사하고 편식과 과식하지 않기 · 남은 잔반 바르게 처리하고 뒷정리하기 · 위험한 놀이나 위험한 장소 가지 않기
청소 시간	· 청소 도구 바르게 사용하기 · 1인 1역할 하기(쓸기, 걸레질하기, 책상정리하기 등) · 청소시작과 종료시간 지키기 · 청소물품 바르게 정리정돈하기 · 위험한 놀이나 장난 하지 않기
방과 후 시간	· 바른 태도로 방과후 활동하기 · 적성에 맞는 특기 개발하기 · 무단이탈하지 않고 허락 받고 활동하기 · 위험한 놀이나 장난하지 않기 · 수업시작과 종료시간 지키기 · 질서 지켜 통학버스 승차하기

학생 인권 및 교내 시설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 일시		월 일 ~ 월 일	
점검 시간	점심 회근전	: ~ : : ~ :	: ~ : : ~ :

점검결과		결과	
주관	점검	점검	점검
전원	전원	전원	전원

분야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월	화	수	목	금	
학생인권 및 안전	학생 인권 침해 및 학교 폭력 발생 여부						
	교실이탈 및 폐회 학생 여부						
	외부인 시정 구단 침범 및 차용 여부						
	학기 소등 및 전기 안전 상태(다목적실, 홀, 중, 고, 전공과 교사 및 공용 화장실, 점멸등, 동명센터 등)						
	관공과 교사 및 공용 화장실, 점멸등, 동명센터 등						
	관공과 교사, 야외화장실, 화장실, 점, 중, 고, 전공과 교사, 운동장, 화장, 다목적실, 점, 중, 고, 전공과 교사 및 공용 화장실, 동명센터 등						
	시설 안전 상태(동명센터, 놀이기구, 창문 등)						
	냉·난방온도(중개 18℃ 이하, 하개 28℃ 이상)유지						
	냉·난방의 사용 유여						
	차량	장애인 구역 주차 및 100% 주차 위반 차량 - 월(1.5) 화(2.6) 수(3.7) 목(4.8) 금(5.0)					
발령 전에 대한 조치 사항							
기타건의							

※ 점검결과 - 양호(O) 보통(△) 불량(X)